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9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 등)	2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9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8. 21.
- (3) 회 부 일 : 2025.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등)

현행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 ○ 대상자: - 65세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비과세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자: - 의원안: (현행과 같음) - 정부안: <u>65세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정부안)</u> ,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비과세한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 송석준의원안</u> - <u>2027년 12월 31일: 이종욱·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 추경호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u>

* 이만희의원안 2024. 12. 4. 발의(의안번호 6200), 이종욱의원안 2024. 12. 30. 발의(의안번호 7075)
 송석준의원안 2025. 1. 2. 발의(의안번호 721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추경호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9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최기상의원안 2025. 1.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과 과세특례 적용대상자를 정비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1년 연장하는 안(송석준의원안), 2년 연장하는 안(이종욱·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이만희의원안, 정부안), 4년 연

장하는 안(추경호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었음.

이에 더하여, 정부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강화하려는 것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²⁾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과세특례는 저축상품 간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환수급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저율 (9%) 분리과세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³⁾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던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25년 9월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 계좌 수는 약 1,008만개, 가입자 수는 약 542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개, 명, 백억원)

연도	계좌 수	신규 계좌수	해지 계좌수	가입자 수	한도금액
2020년말	7,799,461	6,889,402	7,082,289	4,230,086	12,956
2021년말	7,912,717	7,038,086	7,016,097	4,346,098	13,512
2022년말	8,903,875	9,759,520	8,836,983	4,897,897	15,965
2023년말	9,605,841	8,940,672	8,378,731	5,187,421	17,211
2024년말	10,085,000	9,476,829	9,101,001	5,416,950	18,271

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5. 9.

조세지출은 2021년 2,575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 5,46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9,643억원대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리 상승⁴⁾에

3) 20세 이상 일반가입자에 대하여도 저축원금 1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허용하였으나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폐지되었음.

4)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2022년1월)→ 연3.25%(2023년 1월)

따른 이자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2,575	2,554	5,461	9,091	8,964	9,64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자산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계속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66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4,894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669	-0.1
순자산 2분위	2,565	0.8	3,067	0.7
순자산 3분위	6,187	2.0	7,689	1.7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65	3.0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185	4.5
순자산 6분위	22,050	7.0	28,280	6.3
순자산 7분위	29,536	9.4	38,803	8.6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5,032	12.3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3,629	18.6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9,516	44.4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⁵⁾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0.605	0.612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둘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와 헌신을 고려한 것으로 두터운 지원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정부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비

5)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하는 안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첫째, 동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점이 있음.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사회적 약자 혹은 유공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의 거주자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⁶⁾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임.

둘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조세지출 증대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대다수(93.6%, 507만명)가 65세 이상 거주자로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6)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구분	계좌수	가입자수
장애인	569,572	303,253
국가유공상이자	39,019	19,7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1,799	20,162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06	3,664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1,425	629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56	311
65세 이상 거주자	9,435,223	5,069,185

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집중평가), 기획재정부, 2025. 9.

□ 다만, 정부안은 요건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 7)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건은 중복되어 삭제하는 자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7)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